

수원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3나7556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8. 31.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6. 21. 선고 2023가소248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2021. 6. 17.경 피고에게 시가 1,750,000원 상당의 순금 5돈을 매도하였는데 피고가 그 대금 중 1,590,0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1호증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자료가 아니라 원고가 2002. 7. 11. 그 주장의 순금을 구입하였다는 내역에 불과하고, 갑 제2호증은 C이 2021. 6. 17.경 시장을 다녀오던 중 피고가 운영한다는 금은방의 문이 열려 있어 보다가 원고가 피고에게 순금 5돈 금반지를 넘겨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납득할 수 없는 취지의 진술서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와의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국현, 판사 김용태, 판사 이은희